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79번
----------	-------

2020년 9월 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자 : 2020년 8월 12일
- 다.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 라. 상정결과 :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년 9월 3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유연식)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진작시켜 서울의 문화 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나. 이에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문화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1) 사 무 명 :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3) 필 요 성 :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4) 사무내용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 지역문화의·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서울문화재단 기관 개요

1) 소 재 지 :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2) 규 모 : 대지 1,520.2 m^2 , 건물 2,367.41 m^2 (6층 건물)

3) 전경 및 위치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문화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

나. 출연의 필요성

-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보급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음.

연도별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출연금 규모	13,826	43,277	42,026	50,057	57,406	64,183
전년대비 증감액	3,434	29,451	-1,251	8,031	7,349	6,777
전년대비 증감률	33.0%	213.0%	-2.9%	19.1%	14.7%	11.8%

다. 출연규모의 적정성

-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은 전년대비 11.8%인 67억 7,707만원 이 증액된 641억 8,307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출연금	57,406,000	57,406,000	64,183,074	6,777,074	11.8%

- 주요 증액 사유는 '21년 예술현장 밀착형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118억 증액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예술계 현장에 대한 적극적 밀착지원을 위해 “예술청('21년 6월 개관)”, “동숭예술극장” 및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중심의 예술인 주도 거버넌스에 기반한 자율적 예술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임.

〈2021년 신규사업〉

(단위: 천원)

구분		'21년 예산(안)
신규 사업비 총계		11,843,159
예술청	예술청 조성 및 운영	2,681,000
동숭예술극장	동숭예술극장 사업운영	960,000
	동숭예술극장 인력 및 시설 운영	3,192,159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용산예술교육센터	2,500,000
기업제휴	공예·디자인 유통망 구축	200,000
동숭청사 관리 및 운영		2,310,000

※ 예술청+동숭예술극장+동숭청사 사업운영 및 시설관리비 : 9,143,159천원(신규사업 증액의 77.2%)

〈2021년 사업비 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년 예산 (A)	'21년 예산(안) (B)	증감 (B-A)	
사업비 총계	48,519,124	38,402,130	-10,116,994	-20.8%
예술창작 활성화 지원	12,180,000	11,515,500	-664,500	-5.5%
지역 및 시민문화 활성화	15,710,000	11,350,000	-4,360,000	-27.8%
예술교육 활성화	6,910,000	3,436,310	-3,473,690	-50.3%
공간기반 문화협치 확산	7,394,000	6,624,040	-769,960	-10.4%
극장운영 활성화	260,000	0	-260,000	-100.0%
문화정책 개발 및 경영기획 운영	6,065,124	5,476,280	-588,844	-9.7%

- 또한 지속적으로 서울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제기 되었던 문화재단 내 세부 사업의 통폐합 요구에 대응하고자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총 52개 사업 중 9개 폐지 및 통폐합)하여 '20년 기존사업비 중 101억을 (20.8%) 감액 편성하였음.

〈2021년 폐지·통합사업〉

(단위: 천원)

연 번	사업명	2020년	2021년 (안)	증감액	%	비고	폐지·통합사업 사유
		300,000	-	-300,000			
		600,000	-	-600,000	-100.0%		
		520,000	-	-520,000	-100.0%		
		300,000	-	-300,000			
		120,000	-	-120,000			
		400,000	-	-400,000			
		110,000	-	-110,000			
		260,000	-	-260,000	-100.0%		
		300,000	-	-300,000	-100.0%	통합	

- 서울문화재단은 중앙정부의 문화자치·분권의 기초에 따른 균형 발전특별회계의 광역 일반회계 이양, 중앙정부 정책사업의 이 관에 따른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증대에 따른 생활권역 문화서비스의 중요성에 부응하여 지역문화역량을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이 있음.
- 지속적으로 사업 통폐합을 추진 중이기는 하지만 유사 기능과

중복 사업의 지속적 통합 노력을 통해 사업개수 적정화가 필요하며 내부적으로는 적정인력 확보 및 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전략사업의 육성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예술인 지원사업을 편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다빈치프로젝트 등 미디어 기반 융복합 예술프로젝트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급변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대한 대비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화예술지원사업 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779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진작시켜 서울의 문화 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나. 이에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문화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1) 사 무 명 :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필 요 성 :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4) 사무내용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 지역문화의·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소요예산 : 64,183,074천원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나. 서울문화재단 기관 개요

1)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2) 규모 : 대지 1,520.2㎡, 건물 2,367.41㎡ (6층 건물)

3) 전경 및 위치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문화정책과 문화협력팀 양윤미 (☎ 2133-2531)